

August 20, 2014

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– 개인과세 부분

2014. 8. 6.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

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(이하 “조특법”) 104조의 27(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)을 신설할 예정이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개 정 안
적용대상	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·배당수익률 120% 이상 & 총배당금 증가율 10%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·배당수익률 50% 이상 & 총배당금 증가율 30% 이상 상장주식 * 배당성향, 배당수익률, 총배당금 증가율 산정기준 - 배당성향 : 3개년 현금배당금/3개년 당기순이익 - 배당수익률 :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- 총배당금 증가율 : Max(직전연도,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) 대비 증가율
과세방식	• 분리과세 대상 - 원천징수세율 14% → 9%로 인하 • 종합과세 대상 - 25%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*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, 중간배당은 제외
적용시기	• 2015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

적용기한	2017. 12. 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
------	---

2.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

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은 과소배당 받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, 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“상증세법”) 제42조 제7항을 신설하여 초과배당 받은 주주에 대한 기존의 소득세 과세를 증여세 과세로 변경할 예정이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현 행	개 정 안
■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 • 포기 · 과소배당 주주 - 개인 : 과세하지 않음 - 법인 :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• 초과배당 받은 주주 - 소득세 과세	■ 차등배당 받은 특수관계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• (좌동) • 초과배당 받은 주주가 포기 · 과소배당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-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(소득세 상당액 공제)

동 개정안은 2015. 1. 1.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.

3.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

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를 지원하고자,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등을 개정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개 정 안
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(상증세법 제18조)	• 적용대상 확대 -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→ 5천억원 • 영농종사기업 중 첨단바이오업종*은 공제 허용 *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등 영위기업으로서 부동산 보유비율 50% 이하인 경우

가업승계요건 완화 (상증세법 제18조)	• 피상속인 경영요건 완화 -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10년 → 5년 •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 추가 -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 25% 이상인 경우 • 상속인 요건 완화 - (삭제)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• 공동 상속 허용 - 기업별 상속 허용 -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(대표자)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 적용
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 (상증세법 제18조)	• 사후관리기간 : 10년 → 7년 •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완화 - 법인 : 폐지 - 개인 : 50% 미만 처분 허용
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(조특법 제30조의 6)	•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-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, 요건 완화 • 한도 확대 : 30억원 → 100억원 -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% 세율 적용

동 개정안은 2016. 1. 1. 이후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4.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

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및 퇴직금의 연금수령 유도를 위해 소득세법 제59조의 3 등을 개정하여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

구 분	개 정 안
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(소득세법 제59조의 3)	•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* 2015. 1. 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(소득세법 제14조 등)	•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여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, 수령액이 1,200만원 초과시 - 종합과세 → 분리과세 (3~5%) •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- 기타소득 →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(3~5%) * 2015. 1. 1.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(소득세법 제14조)	•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- 종합과세 → 분리과세 (15%) * 2015. 1. 1.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
(2)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

구 분	개 정 안
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(소득세법 제48조 등)	• 소득 수준별로 차등과세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, 퇴직소득 계산시 정률공제 (40%) 폐지 등 과세방식 개선 * 2016. 1. 1.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(소득세법 제129조 등)	•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고자,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30% 세액경감 * 2015. 1. 1.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신설 (소득세법 제148조)	•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와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2. 12. 31.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세액정산을 허용 * 2015. 1. 1.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5.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

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토지의 거래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시행시기를 2015. 1. 1.에서 2016. 1. 1. 이후로 유예하였습니다.

현 행	개 정 안
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• 세율 - 기본세율(6~38%) + 10% • 시행시기 - 2015. 1. 1. 이후 시행	■ 1년 추가 유예 • 세율 - (좌동) • 시행시기 - 2016. 1. 1. 시행

6. 중산층 상속·증여세 부담 경감

상증세법 개정안에서는 명목가치상승 반영, 부모 동거·봉양 지원 및 금융재산공제 현실화를 위해 증여공제액 등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개 정 안
증여공제액 상향 조정 (상증세법 제53조)	•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증여 : 3천만원 → 5천만원으로 상향 • 6촌 이내 혈족 · 4촌 이내 인척간 증여 : 500만원 → 1천만원으로 상향
주택·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·공제금액 상향 (상증세법 제22조 등)	•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: 상속주택가액 × 공제율 (5억원 한도) - 공제율: 40% → 100%로 상향 •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- 공제한도 : 2억원 → 3억원으로 상향 •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대상 추가 - 차명금융재산(상속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)

동 개정안은 2015. 1. 1. 이후 증여받는 분 또는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7.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

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국세 및 관세의 경정청구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,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,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. (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, 관세법 제38조의 3)

경정청구기간 확대 규정은 2015. 1. 1. 현재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 청구 분부터 적용하며,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8.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 폐지

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,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(1,000만원)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. (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, 관세법 제38조)

동 개정안은 2015. 1. 1.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● 조 춘 파트너변호사	TEL. 02 316 4213	E-Mail. ccho@shinkim.com
● 황인석 파트너변호사	TEL. 02 316 4365	E-Mail. ishwang@shinkim.com
●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	TEL. 02 316 4219	E-Mail. ihchung@shinkim.com

Chambers Asia-Pacific Awards 2014
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: Shin & Kim

